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6. 2. 2.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85호로 2026년 1월 19일 유승용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민의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보안관 위촉 규정의 연령 내용 삭제(안 제3조)

나.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규정의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 내용 삭제(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6. 1. 20.~2026. 1. 2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 배경 및 취지

-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제정(2023. 3. 2.)됨.
- 현행 조례는 안전보안관 위촉 시 연령 요건을 두고 있으나, 서울시 자치구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 가운데 연령 상한을 규정한 곳은 영등포구가 유일함.
 - 집행부서에 따르면 안전보안관의 주요 역할이 지역 순찰 및 생활속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제보·신고, 안전문화 캠페인 등 비교적 신체적 부담이 크지 않은 활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령을 기준으로 위촉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고령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운영 과정에서 확인됨. 이에 따라 연령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 아울러, 현행 조례의 해촉 사유 중 사용되고 있는 ‘심신장애’라는 용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1) 제6조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판단되며,

1)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영등포구 인권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질병’을 당연 해축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이에 해당 표현을 삭제·정비함으로써 조례상 차별 소지를 해소하고자 발의된 안전임.
- 한편, 영등포구 제5기 안전보안관(2026년 1월 ~ 2027년 12월)은 57명으로 파악됨.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는 안전보안관 위촉 요건 중 “18세 이상 70세 미만”의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구를 정비함.
- 안 제8조제2항제4호(관리 및 해축)는 안전보안관 해축 사유 중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자구를 정비한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 실태와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차별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주민 참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합리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연령기준에 따른 획일적인 참여 제한을 완화하여 활동 의지와 역할 수행 능력을 갖춘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안전

보안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고령화 사회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으로, 주민 참여 기반의 안전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해축 사유에서 차별적 요소로 인식될 수 있는 용어를 정비한 것은 인권 친화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의 차별금지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선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자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